'근대 국민(민족)국가'와 왕권

담당교수: 배민재

'근대 국민(민족)국가 nation-state'란?

- '근대 국민국가' = '왕조국가'의 극복?
- "법 앞에서의 평등"
- 사적 소유에 대한 보장
- 생명과 인격의 자유 보장
- 국민 : 국가에 충성하는 주체로
- '근대 국민(민족)국가'의 특징
- 1) 국내적으로는 국민주권, 대외적으로는 국가주권
- 2) 가족 ·학교·민족주의·종교 등 국가 통합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 기 → '국민', '민족', '고유문화' 창출
- 3) 반드시 '민주국가'여야만 하는 것은 아님

'국왕(or 황제)'이라는 존재

- •국가권력의 정점 :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운영
- •근대화에 저해되는 존재 / 부정되어야 할 존재?
- •국왕 주도하의 근대국가 수립은 가능한가?
- '국민통합의 상징'
 - : 이데올로기적 의미에서 '국왕'의 존재
- •국왕의 존재를 중심으로 한 근대국가 구상
- 왕권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가

고종의 친정체제

- 1880년 12월 통리기무아문 설치 - 통리기무아문(1880년)-기무처(1882년)-통리교섭통장사무아문·통리군국사 무아문(1882년)-대무부(1885년)
- 전제군주권의 확립을 위한 노력들
 - 궁궐 내 특별기구 통리기무아문-통리군국사무아문-내무부
 - 왕권 보호의 친위 세력 형성(민씨)
- 도전과 장벽들
 -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청
 - 무력도발을 노리는 일본
 - 개화파 세력 vs 양반 유생
 - 농민항쟁

갑오개혁기의 국가체제

- 자주 국권의 확립과 천명 "청국에 의존하는 관념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실히 건설한다" (홍범 14조)
- 왕권을 극도로 제한 "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반드시 분리하고..." "...후빈종척이 간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." (홍범 14조)
- 忠君愛國하는 균질적 국민 형상 지향
 - 신분제 폐지
 - 호구조사
 - 신문 발간 구상
- ☞ 개화파 세력의 입지기반도 굳건하지 못함(일본의 압력)

대한제국과 광무개혁 & 독립협회

- 왕권을 중심으로 한 근대국가 구상
- 1899년「대한국국제」: 전제군주제의 성문화
- •황제권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
 - : 원수부, 경위원
- •황제권 상징화 작업
 - : 직계혈통 추존, 행궁 건립, 환구단 치제(致察) 등
- '臣民' 만들기 : 유교이념의 강화

大韓國國制(1899년 8월 17일)

-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온바 자주독립하온 제국(帝國)이니라.
-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 오실 전제정치이니라.
-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(君權)을 향유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립정 체이니라.
- 제4조 대한국 신민(臣民)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신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.
-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·해엄을 명하시나니라.
- 제6조 대합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옵시고 만국의 공공 (公共)한 법률을 효방하자 국내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(大赦)·특자·감형·복권을 명하옵시다 니 공법에 말한 바 자정율례(自定律例)이니라.
-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(府部)의 관제와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칙령을 발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치행리(自治行理)이니라.
-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(黜陟)·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·훈장 및 기타 영전(榮典)의 수여 혹은 제탈을 하옵시다니 공법에 말한 바 자선신공(自選臣工)이니라.
-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유약국(有約國)에 사신을 파송, 주찰(駐紮)케 하옵시고 선전 (宣戰)·강화 및 제반 조약을 제결하옵시다니 공법에 말한 바 자견사신(自遣使臣)이니라.

日本帝國憲法(1889년 2월 11일)

- 제1장 천황
-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.
-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
-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.
-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,
-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.
- 제11조 천황은 육해공군을 통수한다.
-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, 강화하며
-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.
-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.
- ②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.

●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

- 제18조 일본 신민의 요건
- 제19조 공무담임권
- 제20조 병역의 의무
- ●제21조 납세의 의무
- 제22조 거주 이전의 자유
- 제23조 신체의 자유
- 제24조 재판을 받을 권리
- 제25조 주거 안전의 자유
- 제26조 서신 비밀의 보장
- 제27조 소유권의 보장
- 제28조 종교의 자유
- 제29조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
- 제30조 청원권
- 제31조 전시 또는 국가사변 시의 천 황대권의 제약 금지

황제권과 & 독립협회

- 최고의 국가권력을 어디에 둘 것인가?
 - : 국가권력의 공공성 문제. 황제중심 vs 관료중심.
- 인민의 무권리
 - : 국민적 동원, 통합에 실패
- 러일전쟁 이후 갑오개혁 ·독립협회 주도층이 국민국가 구상
 - : 새로운 국민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
- 입헌군주제의 구상
 - : '군주헌법', '공화정체', '입헌정체'
- 왕권의 공공성 회복 추구